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. 8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,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.

나. 주요내용
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(안 제2조의2)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서 회의 비공포 조항을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에 따르도록 변경(안 제10

조)
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,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의2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,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에 따라 기존 회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
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 의 자 : 이성수, 이순우, 이예찬
· 우경란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,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(안 제2조의2)
- 나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서 회의 비공표 조항을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에 따르도록 변경(안 제10조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8. 2.~ 2023. 8. 8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능) 위원회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평가담당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토지 또는 주택”을 “부동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고가 있”을 “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회의록의 공개)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<u>관계공무원</u> 중 5명 이내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관계 공무원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조의2(기능) 위원회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
<p>제3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관할 세무서 <u>평가담당공무원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<u>토지 또는 주택 등의 이론을 전공한</u> 조교수 이상인 사람</p>	<p>제3조(위원의 위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공무원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부동산</u> ----- -----</p>

<p>6. ~ 8. (생략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는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<u>사고가 있을 때에는</u>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제9조(서류의 비치) ① (생략)</p> <p>제10조(회의 비공표)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<u>아니된다.</u></p>	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-----.</p> <p>제9조(서류의 비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제10조(회의록의 공개)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다.</p>
---	---